##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조정식・민병덕・이병진

정성호 · 김성환 · 김재원

염태영 · 노종면 · 박홍근

이해식 · 정을호 · 한정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 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 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 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임공관장"을 "특임공관장(이하 "특임공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23조, 제24조"를 "제23조부 더 제25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①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 2명 이상

-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명 이상
- 4. 외교 및 영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또는 그 관련 학문 분야나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
- ④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⑥ 그 밖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임공관장 자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외교업무	제4조(특임공관장) ①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	
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	
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	
력을 갖춘 사람을 <u>특임공관장</u>	<u></u> 특임공관장
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하 "특임공관장"이라 한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	②
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	
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u>제23조, 제24</u>	<u>제23</u> 조부터 제
<u>조</u> , 제26조제2항·제4항·제7	<u>25조까지</u>
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	
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①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
	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
	(이하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특임공관

- 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

   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특임공관장 장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 급 이상 직위에 3년 이상 재 직 중인 외무공무원 2명 이상
- 3.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명 이상
- 4. 외교 및 영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서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법률학 또는 그 관련 학문 분 야나 과학기술 관련 학문 분 야를 전공한 사람

- ④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특임공관장 자격심 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특 임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 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